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2022 전라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전라남도
JeollaNamdo

part 1 | 공공행정

01	클릭만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가 손안에 !	7
02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8
03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나눔백신 순천형 권분(權分)운동 추진	9
04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사용자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10
05	40년만에 재산권 행사길 열리다	11
06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로 환경보호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12
07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고시를 통한 과징금 처분 감경기준 명확화	13
08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대상 선정기준 개선	14
09	전국 최초,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	15
10	물품 2단계경쟁 기준 현행화를 통한 업체 부담 완화	16
11	부동산 취득세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17
12	장기 미집행 행정절차 이행완료	18
13	드론을 띄워 숨은 행정력을 찾다	19
14	읍면에서도 법인증명서 발급으로 불편해소	20
15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대	21
16	소상공인확인서 지자체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발급처리	22
17	어촌계 설립인가 조건 명확화	23
18	도서민 여객선 전산발권 제한 불편사항 개선	24
19	농약판매업자 폐업신고 시 서류 절차 완화	26

part 2 | 산업·중소기업

01	붕괴 직전의 꿀벌산업과 생태계를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31
02	'1004개의 섬'신안에도 첨단 스마트팜이 생긴다고요?	32
03	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33
04	무인항공기(중대형드론) 정의 기준 마련	34
05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35
06	공간정보 공개 분류 개정	36
07	공장설립 완료 전 환경분야 상담 및 합동확인으로 위반행위 사전 예방	37
08	산업특구 지정으로 굴비업자 애로 해소	38
09	자치법규 적극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입지 규제 개선	39
10	골재채취업자와 광업권자 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골재채취법 개선	40
11	신속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민의 인력난을 해소하다!	41
12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자 선임요건 완화	42
13	LPG배관망·전선지중화·가로등 지하 매설사업 동시 추진으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 최소화	44
14	아이스팩 재사용 추진을 통한 환경보호(탄소중립)와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비용 절감	45

part 3 | 보건·사회복지

- 01 감면받고 또 관리받는 전국최초! 산후조리서비스(공공&가정) 중복 제공 49
- 02 야간시간대 약국 운영으로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50
- 03 의료기관을 통한 긴급의료지원 신청체계 개선 51
- 04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 52

part 4 | 국토·지역개발

- 01 4차산업의 혁명,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D2D 규제 개선 55
- 02 신규 도로노선 지정으로 보통교부세 및 국비예산 증액 56
- 03 전국최초,e-모빌리티 전용도로 조성으로 신산업 인프라 구축 57
- 04 지역특산물 지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58
- 05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위한 대체편입부지 마련으로 주민들의 규제 개선 59
- 06 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60
- 07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투자 지원 확대 61

part 5 | 관광·문화

- 01 노래연습장, 게임산업 폐업 신고 절차 개선 65
- 02 ICT 기반으로 농어촌 지역간 격차 해소와
새로운 관광지 스마트 치유마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6
- 03 맛집 지정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7





Part 1.

공공행정



클릭만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가 손안에 !

개선배경



- 2022년 청년브랜드 신규시책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 전국최초 시행, 전남청년이 문화복지카드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은행을 직접 방문(2회)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사업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발급 : 은행

- 신청의 편리성,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세대 특성, 사업량이 대규모(12만명)인 점을 감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과 카드 등기 송부가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함

개선 후

- 은행과 협약을 통해 은행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과 카드 우편 등기 송부로 직접 방문 없이 클릭만으로 신청과 카드 수령 가능

- 광주은행과 협약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카드 우편 송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 농협까지 협약은행을 확대하여 추진
- 거주요건을 확인용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개선효과



전라남도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2022 41-490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일(음력)이 41~49세인 청년

지원 내용: 문화복지카드 발급 지원금 40,000원 (카드 발급 비용 10,000원 포함)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지점

카드 발급: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 문화복지카드를 통해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나 은행 방문 없이 클릭만으로 카드 신청에서 수령까지 모두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청자들의 불편 해소와 참여 편리성 확대



02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개선배경



- 다양한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독서인구가 줄어 들고 있어 독서 활동 장려 및 지역 서점 활성화 대책 필요
- 청년들의 취업난과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속에 독서할 여유를 찾지 못하거나 도서구입 비용부족으로 인한 지역서점가 침체 위기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청년들의 자기 비용 부담으로 도서 구입 저조 및 독서량 감소 · 지역서점들의 폐업 위기 상황 전개	· 청년 취업과 자기개발을 위한 도서 구입비 지원으로 도서구입 증가 및 지역 서점 매출 증대

- 청년 독서활동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 원활한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을 위한 시스템 기능 보완 구축
- 시립도서관과 지역서점 참여 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도모

개선효과



- 여주시 청년의 취·창업 및 교양도서 지원으로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입으로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주시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대상: 만 19~39세(1982~2002년생) 여주시민 *2022.1.1.기준
 신청기간: 2022. 4. 18. ~ 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여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을 방문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지원금액: 신청도서 구입비의 50% 지원(1인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대상: 취업·창업 및 자격증 관련 도서, 교양도서 등
 구입처: 여주시 지역서점
 - 가톨릭(여서점), 간송문고(여서점), 아레서점(소라면), 한빛서점(선원동), 홍지서점(충무동), 나관서점(산가동), 한려서점(여서점), 여주고서점문구(공평동)
 *도서관장 알릴 후 3일 이내 신청서점에서 구입(신분증 지참)
 문의: 이순신도서관 061)659-2861

여주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3. 12. 3)
 (일부개정) 2023. 12. 3. 조례 제168호

제4장 독서문화 진흥
 제36조(청년 도서 구입 지원) 시립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청년 (「여주시 청년회합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이 독서활동을 증진하고 취업·창업에 지원하기 위해 「여주시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서점에서 청년이 취업·창업분야에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에 할당해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12. 3.]

별지/서식
 [별표 1] 여주시립도서관 명칭 위치
 [별표 2] 사용료 등 징수 기준
 [별표 3] 사용료 등 반환 기준
 [별지 서식] 사용료(수납료) 반환신청서

추진부서(☎) | 여주시 시립도서관(061-659-2861)

03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나눔백신 순천형 권분(權分)운동 추진

개선배경



- 코로나19로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소상공인 타격 및 지역사회 활동 위축
- 각종 봉사활동 감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증가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급식 무료봉사 시설 등 운영중단으로 끼니 어려운 이웃 증가 · 골목상권 위축 및 지역상권 활력 감소 · 소득 감소로 생계 위협 가구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력 감소	· 기부금 2억, 권분꾸러미 5,500명 지원 · 착한선결제 2,342건 9억원 · 기부금 2억, 권분가게 8,217명 이용 · 기부금 1억, 김장김치 3,600여 명 지원

- **권분운동 추진**: 코로나19 시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운동, 모든 재원은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부자, 봉사자, 수혜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순천대표 나눔 운동
 - 시즌 1 : (권분꾸러미) 민관 합동 권분꾸러미(쌀, 반찬 등) 제작 후 취약계층 전달
 - 시즌 2 : (마스크 권분) 순천시민 마스크 권분운동 전개
 - 시즌 3 : (착한선결제) 자영업자 업소 선결제 후 재방문 약속하는 소비자 운동
 - 시즌 4 : (권분가게) 어려운 이웃에 월 1회 3만원 상당 물품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 시즌 5 : (어깨동무가게) 소상공인 연계 어려운 학생 무료 식사, 교복 등 지원
 - 시즌 6 : (모두애티켓) 시민장애 인식개선 영화 나눔
 - 시즌 7 : (다같이김치) 권역별 김장 릴레이 실시 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기관 전달

개선효과



- 코로나19 속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
 - 누구나 손쉽게 기부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부·나눔 문화 형성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지역경제 회복



04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사용자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개선배경



-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사용 수용가 하수도 요금 할인을 통한 불합리 해소
- 정화조 처리비용 및 하수도요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이중부담으로 잦은 민원 발생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정화조 연 1회 이상 청소 실시/「하수도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 정화조 사용 수용가와 정화조 미사용 수용가의 동일 요금 부과로 정화조 사용 수용가는 경제적으로 이중부담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사용 수용가의 하수도요금 할인 불가	· 순천시 하수도 조례 개정 - 정화조 사용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 내용 신설(제28조제6항) -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순천시 하수도 조례 개정: 2022. 4. 8. 시행
-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설치 수용가 하수도 요금 감면’ 보도자료 제공 및 정화조 설치 수용가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홍보 읍면동 공문 발송

개선효과



- 관련 법령 불비로 인해 이중부담, 불합리한 부분 해소가 어려웠으나, 조례개정을 통해 수용가의 권익 보호 및 요금감면 혜택

순천시 정화조 사용 수용가 감면

통합 VIEW 이미지 지식IN 인물투어서 동영상 쇼핑 뉴스 어학사전 지도 ...

www.jnilbo.com > view

순천시, 정화조 설치 수용가 대상 하수도 요금감면 - 전남일보

순천시는 개정된 '순천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설치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대의 매년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비용과 매월 납부하는 하수도 요금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해 지...

2022.04.27.

www.asiae.co.kr > article

순천시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설치 수용가' 하수도 요금 감면 - 아시아경제

추진부서(☎) | 순천시 맑은물행정과 (061-749-6486)

05

40년만에 재산권 행사길 열리다

개선배경



- 다시 5일시장 주변에 다수의 생계형 점포와 소규모 주택이 오랜기간에 걸쳐 시유지를 점유하여 마을을 형성함
- 부동산 소유권 미확보로 인해 각종 제약을 받는 주민 고충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관리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전통시장 관리를 위해 확보된 행정재산에 다년간 생계형 점포, 소규모 주택 등 다수의 건축물이 축적되어 무단점유에 따른 주민 주거 및 생업 불안	· 본래 기능 상실 및 장래 활용 계획 없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시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매각을 통한 주민 고충 해소
• 점유 실태조사 및 지적재조사사업 주민 설명 • 다시동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변상금 부과·징수(42명, 90,756천원) • 행정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	

개선효과



- 본래 기능 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로 전통시장 시유재산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후 미활용재산 적정사용 및 처분 추진으로 주민 고충 해소



다시옛전통시장 항공사진



점유실태조사 관련 주민설명회

06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로 환경보호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개선배경



- 1회용 아이스팩의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소각이 불가능하고 매립하더라도 썩는데 500년 이상이 소요됨
-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약 80%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매립되고 있고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되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아이스팩이 재활용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음	· 재활용 되지 않고 버려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아이스팩의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재활용 활성화

- 2021. 7. 9. :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 2021. 5. ~ 9. :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추진
- 2022. 5. 26. :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보조금 지급(30백만원)
- 2021년 6백만원 → 2022년 30백만원
- 2022. 5. 26. :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체결
※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 배출처 : 19개 공동주택 및 금호주택단지
- 수요처 : 중마시장, 광영시장,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유)민음식품, (주)두리식품
- 수거, 배부 : (사)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 2022. 6. ~ 10. :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

개선효과



- 아이스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
- 아이스팩 수거 후 세척·건조 과정을 거쳐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무료배부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처리비(종량제봉투 구입비용 및 매립비용) 절감 및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고시를 통한 과징금 처분 감경기준 명확화

개선배경



- 환경법(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및 제44조제1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6항 및 제66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하여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행정심판 재결서나 법원 판결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환경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감경기준이 불명확하여 가중·감경 미 실시	과징금 부과 시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 및 고시로 임의적, 주관적 과징금 부과 가능성 예방
• 행정처분 검토 중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하였지만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 (2022. 2. 21.)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통해 「과징금 가감율 고시기준안 마련」에 대한 행정적 타당성 검토 및 가감율 고시 추진 - 과징금 감경은 부과권자의 재량행위이며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회신 받음 •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기준」 고시(광양시 고시 제2022-145호, 2022. 4. 19.) •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최초 적용(2022. 4. 25.)	

개선효과



- 과징금 가감률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효율성 증대

08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대상 선정 기준 개선

개선배경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신청자격이 영세 및 소규모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 귀농귀촌 및 청년 농업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 종사년도에 따른 가점 부여로 불리하게 적용
- 경작면적이 크고 보조금 수혜가 많은 농업인이 보조금을 계속 받는 사례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소형저온저장고 최소 설치면적 9.9㎡ · 1,000㎡ 이상의 농지 경영·경작자 지원 · 부부합산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지원 자격 제외	· 소형저온저장고 최소 설치면적 6.6㎡ · 시설하우스 33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원 · 농업경영주의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외

- 대규모 경작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농가 배려
- 개인 재산세 과세표준은 관외재산 등이 파악되지 않아 전국 재산세 과세액을 적용하여 영세 농가 배려

개선효과



- 소규모 시설하우스 농가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농촌 소득 증대 기대
-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농가를 배려하는 한편 원예농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
- 귀농귀촌 및 청년농업인을 우대하여 농촌 인구 증가

2022년 06월 17일 (금)
지역 07면

광주타임즈

담양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호응'

114농가 설치비 50% 지원...예산 추가확보해 하반기에도 시행

담양군(군수 최명식)이 과수, 채소 등 원예 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추진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수확 후 신선도 유지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원예 농산물의 보관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설치비용이 530~630만 원으로 농가의 부담이 크다.

이에 군은 총 사업비 9억3000만 원을 확보해 총 114농가에 설치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해 저온저장고 규모는 최소 6.6㎡에서 0.9㎡로 원지 기능에 맞게 하고, 임대료를 최소 세 배만 책정 1000㎡, 시설하우스의 경우 330㎡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영세농가, 친환경인증 농가, 귀농귀촌인이나 청년 농업인은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재는 지원대상 농가가 확장돼 78농가 완공, 36농가는 사공 중이며,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하반기에 담양시무소 산업재정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원예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유통기한 연장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설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상우 기자



전국 최초,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 진료소 운영

개선배경



- 매년 유기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센터 전염병 발생 및 동물복지 저하로 민원 과다 발생
- 유기견 발생현황 : '19년 269마리 → '20년 284마리 → '21년 326마리
- 만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기관 부족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매년 유기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센터 전염병 발생률이 높으며 질병 · 위생 관리 미흡으로 분양률이 저조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진료 및 의료 서비스 기관 등 인프라 부족	반려 · 유기동물 공공진료소 개소를 통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이용활성화 제고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질병관리 및 입양체계 확립으로 파양률 감소

-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22. 4. 12.
-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 운영 재정 근거 마련
- 반려유기동물의 진료, 전염병의 예방 및 예방, 건강진단 등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업무 범위 규정
- 담양군 반려 · 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추진
- 공공진료소 설치 · 운영비 예산확보(1.8억원) : '22. 3. 29.

개선효과



- 담양군 반려 · 유기동물 공공진료소 개소 : '22. 4. 20.
- 만65세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감면 등으로 공공진료소 접근성 및 이용활성화 제고
- 유기동물 개체수 및 분양율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치유센터 질병관리 및 입양체계 확립
- 입양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따른 유기동물 개체수 조절로 담양군 유기동물 감소 효과 및 사업비 절감



10

물품 2단계경쟁 기준 현행화를 통한 업체 부담 완화

개선배경



-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관급자재)을 동일 업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때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총 651종
- 상황변화에도 기준은 그대로여서 같은 물량 발주에도 2단계경쟁 대상 범위 확대
 - 꾸준한 물가 상승과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쟁 대상이 늘어남
 - 신속집행 추진 등에 따라 상반기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물량 경향이 더해지면서 구매 절차가 복잡해지며 신속한 구매가 어려움
- 2단계경쟁에 따른 관내 업체와의 계약 불가로 지역 기업 매출에 악영향
 - 규모가 작은 군 단위에 소재한 업체는 매출액의 많은 부분을 해당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해당 물품(관급자재)이 2단계경쟁 대상이 되어 해당 물량 계약을 놓친다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됨

개선내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

현 행	개정안
제3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 ~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제3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 ~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관급자재) 구매 2단계경쟁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도록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대상 기준을 현행화

개선효과



- 변화를 따르는 공정성 확보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제거 및 신속한 재정 집행
- 기준 현행화를 통한 소규모 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부동산 취득세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개선배경



- 부동산 취득세 및 등기절차 문의 증가
 -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세율, 구비서류 절차에 대한 문의
 -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 부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셀프등기에 대한 문의 급증
- 부동산 취득세 셀프등기 절차를 안내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 부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셀프등기에 대한 문의 급증

개선 후

- QR코드를 활용 유형별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절차 과정 안내 서비스 제공

개선효과



- 셀프등기를 원하는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절감 도모
-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 및 세율, 준비서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신고납부 기한 일실 방지
- QR코드 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 서비스 지원 및 군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



12

장기 미집행 행정절차 이행완료

개선배경



- 대한체육회에서 전국 체육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종합 교육 시설 건립 계획에 따른 공모 응모 최종 대상지 선정
- 대상지는 장흥댐 건설 시 현장사무실 등 댐 지원시설로 활용 후 공원 및 체육시설로 조성되었으나 농업진흥구역(전·답) 해제 등 행정절차 미완료

개선내용



개선 전

장기 미집행 행정절차로 인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불가로 체육인재 개발원 설립 사업 추진 난항

개선 후

적극적인 행정 개입으로 해당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전·답→공원, 체육용지)

- 농림축산식품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 수차례 방문 협의해 당위성 설명
- 나라기록관, 행정기록관 방문을 통해 확보한 핵심 자료를 근거로 농업진흥구역 미해제 경위 설명 후 지목변경 완료(전·답→공원, 체육용지)

개선효과



- 장기 미집행 행정절차로 인한 행정 불신 초래 방지
- 관계 부서 수차례 방문 협의 설득을 통한 적극적 행정 개입으로 군의 미래 성장 동력 부지 확보



추진부서(☎) | 장흥군 스포츠산업과 (061-860-6281)

개선배경



- 자연재해(농, 축, 수, 산) 피해조사(NDMS입력 등) 기간(사유시설 10일)이 짧고, 행정력 부족으로 신고 및 조사 누락 등 민원 다수 발생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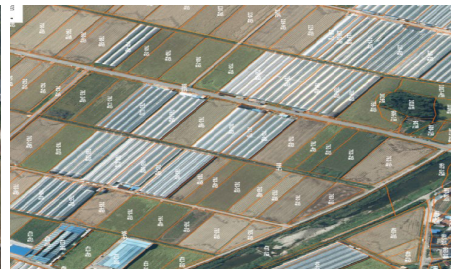
개선 전	개선 후
·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료사일리지 생산량 조사 등 매년 진행되는 현지 조사 시 도보 현장 확인만으로는 신속·정확한 지적형태 및 생산량 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예산·행정력 낭비 우려	· 신속 정확한 조사로 행정력 제고 및 피해 조사 누락 방지 등 민원만족도 상승 ·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실제 측량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지적도)과 실제 측량 현황이 명확화 되어 민원인과 분쟁 소지 해소

- 드론 항공 촬영(4K화질 동영상)과 테블릿pc(지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드론 1회(25분) 항공 촬영으로 120ha 면적 조사
- 자연재해 농업(농작물 도복 및 농경지 유실 등), 산림(산림훼손 유실) 등 드론 항공 촬영과 공간정보시스템을 비교하여 정확한 피해면적 등 조사

개선효과



- 드론 활용 조사료생산량 조사로 누락 필지 발견 후 보조금 정산
- (대구면 총 60ha / 60백만원 중 5ha / 4.8백만원 누락 필지 생산량 반영)
- 신속 정확한 조사로 행정력 제고 및 피해조사 누락 방지 등 민원만족도 상승
- ('21년 : 190농가 / 62ha / 144백만원, '22년 : 10농가 / 3.5ha / 4백만원)



드론 영상촬영(4k화질)으로 위성 지적도와 대비하여 사일리지 생산량 조사

14

읍면에서도 법인증명서 발급으로 불편해소

개선배경



- 읍면소재 기업체의 법인관련 서류발급 불편 민원 증가
- 법원행정처 내부지침에 따라 설치승인 지연

개선내용



개선 전

법원행정처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관할지역내에 등기소가 위치하지 않거나 등기소가 이전된 곳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신규설치에 부정적

개선 후

법원망 사용을 위한 법원과의 업무협의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법원행정처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관할지역 내에 등기소가 위치하지 않거나 등기소가 이전된 곳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신규 설치에 부정적
 - 영암군 기업체의 80.1%는 영암읍을 제외한 여러 읍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 서류를 제출함
- 법인 관련 제증명 민원 수요가 많다는 증명 서류 제출 요구
 - 영암군 주요 산업단지 현황과 더불어 법인등기기록 및 등기소 제증명 발급 현황을 제공받아 단순 발급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해 법인 민원 수요가 높다는 사실을 증명함.
 - 발급기 설치 승인은 관할 법원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행정처와 추진하는 사항들을 목포지방법원 및 영암군 등기소와 지속적 협의 및 자료공유

개선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 및 제공으로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
- 전남도내 최초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사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



추진부서(☎) | 영암군 민원소통과 (061-470-2429)

개선배경



- 현행법상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임.
- 해당 기간에 실경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과실(고령의 농업인들이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한 경우) 또는 행정과실로 인해 해당 기간에 직불금을 미신청하여 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이로 인해 현재('20년~)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개선내용



-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여 실경작이 확인되면(이장 확인, 농자재 구매 이력 등)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개선효과



- 지급대상 농지 증가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
- 읍·면사무소 일선 직원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한 피로감 감소

16

소상공인확인서 지자체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발급처리

개선배경



- 소상공인확인서(세액공제용) 발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기타 지원사업 신청시에 제출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을 통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시 세무관련 구비서류 등이 다양하여 대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소상공인확인서(세액공제용)는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공단 지역센터가 전국 광역시, 시 단위에만 위치하여 군 단위 지역 소재 사업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세액공제용)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 경과 시 신규발급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기간 내 재발급의 경우에도 별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개선내용



- 소상공인확인서 재발급 시 시군 민원실에서 민원시스템을 통해 확인서 발급
 - 온라인 발급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전에 확인서 발급이 이뤄진 경우 재발급 사무는 공단 시스템을 지자체 민원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시군 민원실에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 “민원24, 어디서나 민원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시군 민원실에서 확인서 발급
- 유효기간 경과 후 소상공인확인서(세액공제용) 재발급시 발급절차 간소화
 -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후 재발급 신청시에는 시군 민원발급 신청서에 세무 관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 공단 지역센터에서 세무서 매출액등을 확인하여 발급민원을 처리한 후 시군 민원실에서 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

개선효과



- 확인서 발급을 위해 원거리 공단 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지역 내에서도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소상공인 민원 편의 제공에 기여
- 전자적 처리를 통해 기관 간에 증명민원이 가능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주민 만족도 제고

개선배경



- 어촌계 설립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어촌계의 설립인가(신규, 분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구역 및 어장 약도를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구역 및 어장 약도’에 대해 별다른 단서 조항이 없음.
 - 행정구역만 나누고 어장(지선)구분을 하지 않음.(어장약도 미첨부)
 - 구역과 어장이 없는 상태로 어촌계 설립 신청
 - 기존의 어촌계가 설립 인가받은 어업구역을 중첩된 구역으로 하여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등의 사례 빈번
- * (거제) 소송으로 기존 어촌계가 설립 인가받은 구역과 어장약도로 어촌계 설립 ▶같은구역과 어장 약도로 또다른 어촌계 설립▶어업구역 경계확인 소송
- 기존 어촌계와 신규로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어민들 간 갈등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촌계와 행정 간 소송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개선내용



- 어촌계를 신규 설립하거나 기존 어촌계에서 분할하여 새로운 어촌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 제출서류 중 ‘구역 및 어장 약도’는 이미 설립인가 받은 어촌계의 구역 및 어장이 중첩되지 않고 지선 구분을 명확히 한 곳에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

개선효과



- 어촌계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어촌계의 구역과 같거나 중첩된 경우 설립인가에서 제외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어촌계 간 분쟁을 사전에 해소

18

도서민 여객선 전산발권 제한 불편사항 개선

개선배경



- 「해운법」제44조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규정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제5조 제4항에 따르면 도서민 여객선 이용 시 섬 지역 연속적인 입도 또는 출도 시 발권을 제한하고 있음.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5조(전산발권 등)

- ④ 제3항에 따른 전산발권을 할 때 도서민의 연속적인 입도 또는 출도만을 위한 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산발권이 제한된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른 이동수단 이용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여객선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발권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도서민의 연속적인 입도 또는 출도 시 발권 제한이 되면 여객선 승선을 위한 전산발권이 불가하여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여객선사 제출 시 해제는 가능하나,
- 여객선 이용객들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선장의 확인서, 출항일지사본, 수화물증, 기타 이동확인 증명서 등)를 여객선 이용객들이 당일 또는 즉시 발급받을 수 없어서 불편사항 발생
- 완도 지역은 인근 주변 근거리 지역에 섬 지역들이 많아 사선을 통해 섬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도기록은 남으나 출도기록이 전산에 없을 경우에는 발권제한 문제가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5조(전산 발권 등)

①~③(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전산발권을 할 때 도서민의 연속적인 입도 또는 출도만을 위한 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산발권이 제한된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른 이동수단 이용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여객선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발권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선 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5조(전산 발권 등)

①~③(생략)

④(삭제)

별지 제1호서식(삭제)

- 도서민 여객선 전산발권 제한 불편 사항 개선 요청(보길면)
- 규제 건의 사항 관련 개선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상반기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과제 제출 및 해양수산부 수용의견 제시

해양수산부 검토 결과

섬이 밀집해있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선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해운조합으로부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 개선방안을 확인한 후 동 조항 삭제 등 추진 검토

* (예시) ①운임지불 이후 사유를 입증할 증빙 제출 시 차액환불, ②할인발권 후 사후 점검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질 경우 지원액 환수, ③금액이 큰 원거리지역만 연속발권 제한 등

- 전산발권 제한 사항 관련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 개선방안 검토 추진

개선효과



-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시 전산발권 상에 연속적인 입도 및 출도 빈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입도 및 출도에 대한 발권제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하였으나,
- 해양수산부 검토의견에 기반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 시 근거리 지역의 섬 이동 시 연속발권 제한 사항 해소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 기여

19

농약판매업자 폐업신고 시 서류 절차 완화

개선배경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9조(폐업의 신고) 규정에 의하면 농약 제조업자 등(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영업 폐업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① 제조업자 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또는 원제의 폐기·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폐업신고 시 폐업할 사업자 입장에서 농약판매업 관련 신고증을 보관을 하였으나, 신고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본이 있기에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제출 할 수 있으나, 분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 통해 신고증 재발급 절차 진행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발생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거 신고증 재발급 시 분실사유서 작성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나, 폐업 신고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신고증 분실 시 재발급 통해 신고증 재발급 이 후 다시 폐업신고 처리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개선내용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개정요청(농림축산식품부)

개선 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폐업의 신고 등)

- ① 제조업자 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생략)

개선 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폐업의 신고 등)

- ① 제조업자 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다만,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12호서식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개지로 제출하지 않음)
2. (생략)

- 농약판매업자 폐업 신고 시 서류 절차 완화 개선 요청(완도군)
- 규제 건의 사항 관련 개선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하반기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과제 제출 및 농림축산식품부 수용의견 제시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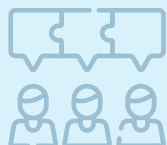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의 서식(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12호 개정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중(~'22. 12월)

개선효과



- 농약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할 경우 당초 신고증 재발급 이후 폐업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현행 법령으로 폐업신고 처리에 불편한 사항 개선
- 농약판매업자 신고증을 분실 시에는 별지12호 서식에 분실사유 기재만으로 폐업 신고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및 폐업신고업자의 불편사항 해소 기여



Part 2.

산업 · 중소기업



01

붕괴 직전의 꿀벌산업과 생태계를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개선배경



- 기후변화 및 이상기온에 따른 밀원*의 개화 불순으로 벌꿀 생산량이 감소하여 꿀벌농가 경영난 가중
 - 꿀 생산량 : '17)7.3 → '18)3.3 → '19)7.9 → '20)0.8 → '21)1.6만톤(추정)
 - * 밀원 : 꿀벌이 꿀을 빨아오는 원천이 되는 나무·식물(꿀샘식물)
- 전국적으로 꿀벌이 월동기간에('21. 11. ~ '22. 1.) 폐사 및 사라지는 등 미 귀소 피해 발생
 - 전 국 : 6,734농가, 51만군(전국 253만군의 20%)
 - 전남도 : 1,280농가, 10만군(조사대상 24만군의 42%)
- 꿀벌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

개선내용



- 이상기온에 따른 개화불순의 농업재해 인정 및 가축재해보험 내 이상기온에 의한 벌꿀 생산 감소 피해 지원 신설 건의
- 이상기온에 의한 꿀벌 미 귀소 등 피해 및 벌꿀 생산량 감소를 농업재해 인정,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벌꿀 생산량 감소, 꿀벌 질병 특약 추가) 건의
- 꿀벌산업 안정을 위한 전라남도 자체 피해대책 추진
-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꿀벌 피해를 사육기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재해발생 기준으로 예비비 확보(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추진)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추진 중(국회)

개선효과



- 봄철 개화기 이전 사육기반 안정으로 생산량 증가 및 농가 소득안정 기대
 - 사육기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3 ~ 4월중) 내 꿀벌을 구입하도록 사업지침 시행
 - 금년도 기상 여건 양호 및 꿀벌 입식 지원으로 농가별 벌꿀 채밀량 증가
- 꿀벌산업 활성화로 과수·농작물 생산 안정화 기여
 - 꿀벌의 화분매개로 참외·수박·오이 등 시설하우스 작물의 생산성 향상 기대



02

'1004개의 섬'신안에도 첨단 스마트팜이 생긴다고요?

개선배경



-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농장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 공모 추진(농림축산식품부)
- (조성규모) 부지 5ha 및 시설면적 4ha 이상, 사업비 200억원(부지매입비 미포함)
- 대한민국 대표 도서지역인 신안군이 공모사업에 응모, 스마트팜은 대규모 면적과 자원, 기술력이 투입되는 첨단농업으로 섬지역은 해상운송, 유통 등 관련 스마트농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평가위원 선임견 팽배

개선내용



- 농식품부 공모 알림 및 시군 대상지 신청 접수
- 경영실습 임대농장 적극 추진중인 신안군 신청
- 도 자체 평가자문위원 구성, 현장방문 및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도·군 농식품부 공모 선정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
- 농식품부 방문 섬지역 특수성을 극복한 사업의 필요성 설명
- 농식품부 주관 서면 및 현장평가 시 지자체 추진 의지 피력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공모사업 선정

개선효과



- 신소득작목 특화단지 구축과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성공모델 제시
- 스마트팜 조성 및 확대를 통한 청년농 유입 및 정착 유도
- 수국공원과 연계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 촉진



03

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개선배경



-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책 필요
- 광양시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 근거 없음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업종범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 마련

-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04. 29.

개선효과



- 수소산업 육성 기반구축 지원 근거 마련으로 수소산업 추진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



04 무인항공기(중대형드론) 정의 기준 마련

개선배경



- 중대형드론(중량 150kg 초과)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로 분류되어 있음
- 자치법규 상 드론의 기기 분류를 150kg 이하의 초경량 비행장치로만 한정해 중대형 드론의 경우 자치법규상 분류기준 미비
- 중대형드론의 경우, 소방헬기대체용 등 활용도가 매우 높으나 기기등록이 불가해 규제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시범비행조차 불가함

개선내용



- 자치법규상 중대형드론을 드론에 포함할 수 있도록 무인항공기 정의 기준 마련
 - 관련 업체와 규제애로 개선 방안 마련 회의
 -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조례 개정 추진중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신 설) 가.~다.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선 나.~라. (현행 가.~다.와 같음)

개선효과



- 중대형 드론의 시범비행을 거쳐 연구 개발을 통해 소방헬기 대체 및 철탑 물류 수송 등 신성장산업의 범위 확대

05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개선배경



- 스마트팜 구축 시 단동하우스(1개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를 운영하는 소규모 농가 비용 및 기술학습 부담
-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인구소멸 및 고령화로 인하여 인력부족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시스템 구축 어려움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최첨단 농업육성이 대규모 연동하우스 위주의 대농들로 추진하여 소규모농가 진입 어려움	기존 대규모 연동하우스에 비해 관리효율이 높고 소규모 농가 쉽게 스마트 시스템에 진입 가능
•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관제센터를 통해 과채류 재배농가의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내부의 환경정보를 실시간 수집 후 분석정보를 농가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 • 하우스 온실환경제어 및 토양 관수 자동제어 시설설치로 하우스 동별 토양환경에 따라 개별 관수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통합시스템(허브, 공유기 등)을 갖추어 통합형 컨트롤이 가능	

개선효과



- 스마트팜 정보를 농가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농업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실현 목표달성
-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작물생산으로 내수 및 수출경쟁력 강화



추진부서(☎) | 영암군 농업기술센터(061-470-6607)

공간정보 공개 분류 개정

개선배경



- 무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공간정보 분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를 위해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공개제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어 산업 발전 저해

개선내용



개선 전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공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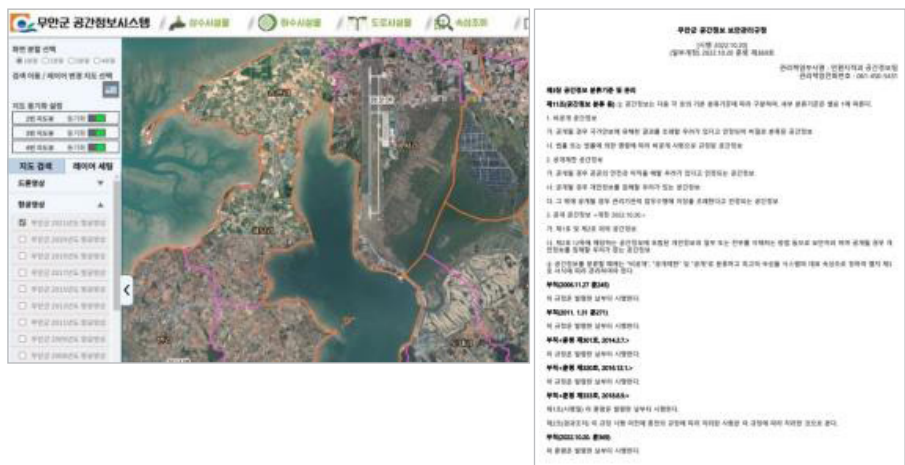
개선 후

개인정보의 일부를 전부를 삭제한다면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공개가 가능
→ **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 다양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디지털
신산업 분야 활성화**

개선효과



- 가명처리 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디지털 관련 신산업 창출 및 관련 분야 산업 발전



추진부서(☎) | 무안군 민원지적과(061-450-5433)

07

공장설립 완료 전 환경분야 상담 및 합동확인으로 위반행위 사전 예방

개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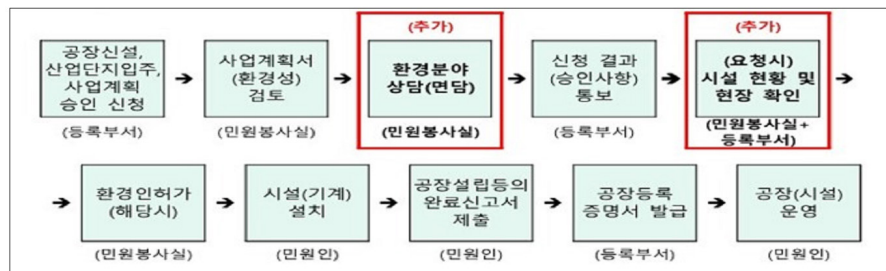
- 공장 신설 및 사업계획 승인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만으로는 배출시설 여부 확인 한계
- 사업주가 배출시설 여부 확인 후 허가·신고하여야 하나, 인식하지 못하고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사례 발생 우려
 - * 무허가·미신고 운영시 개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공장설립시 배출시설 미신고 사례 발생	공장설립 완료 전 사전 민원인 상담 및 합동 현장 확인으로 환경관계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

- 공장설립 완료전 환경분야 상담 및 합동확인 추진계획 수립
 - 관련부서(2개 부서)와 협업 추진
- 사업계획서(환경성) 검토 후 민원인이 환경관련 상담(면담)을 받도록 조치
- 사업주 요청 시 시설 현황 및 현장 확인



개선효과



-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사업주의 행정 신뢰도 향상
- 환경분야 위반율 감소 및 사업장의 관심 증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로 깨끗한 함평 이미지 제고

08

산업특구 지정으로 굴비업자 애로 해소

개선배경



- 영광굴비는 영광군의 독특한 염장비법, 해풍 · 기온 · 습도 등 지역적 특성, 수작업 생산 등으로 타 지역 굴비에 비해 무기질과 타우린 글루탐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맛도 뛰어나. → 국내 굴비 최대 가공 생산지(전국 굴비 생산량의 80% 이상 점유)
- 그러나 최근 수입 개방으로 중국산 조기 구입이 쉬워지고 국내산 조기와 구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일부 굴비업체가 중국산 조기를 굴비로 가공 · 판매하면서 영광굴비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음.
- 그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미진하여 생산 · 유통되고 있는 굴비의 품질과 가격의 정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청탁금지법 시행과 참조기 원가상승, 식문화 변화로 인한 소비 위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중국산 조기 가공 · 유통, 청탁금지법 시행, 참조기 원가 상승, 체계적인 연구 미진 등으로 굴비산업 위기 봉착	굴비 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규제특례사항 적용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4조) 적용 : 굴비거리 이미지 개선사업과 굴비 조형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기준 완화 적용 ②『특허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55조) 적용 : 굴비만두, 어묵 등 굴비 신제품 개발에 따른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적용(특허등록절차의 신속화) ③『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68조) 적용 : 특구 내 생산된 굴비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된 표시 적용(품질 보증 및 브랜드 강화) ④『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40조) 적용 :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지역특산물을 구입	

개선효과



- 영광굴비의 부가가치 ·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특구 지정을 통한 시설 개선 및 품질 향상으로 해외수출(미국, 일본 등) · 판매 확대(굴비가공업체 매출↑, 기업 유치 효과↑)
- 굴비품질인증제, 지리적표시제 도입(유사제품과의 차별화)을 통해 수입산으로 인한 피해 방지



간판 통일화 작업(전→후)



굴비 상징물 정비

추진부서(☎) | 영광군 해양수산물 (061-350-5428)

자치법규 적극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입지 규제 개선

개선배경



- 영광군「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은「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공공용지나 가동 중인 공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함.
*주요도로: 「도로법」 등에 의하여 정비된 도로와 포장된 5m 이상의 도로
- 현 조례상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은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대마산업단지 내 도로로 인한 공장시설 지붕에 태양광 설치 제한”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규제 개선 지속 요구
 - 일반도로가 아닌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기업 운영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전기요금 부담 가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으로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증가 및 기업 경쟁력 약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한 산단 공장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용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한 산단 공장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용 -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제3항 제7호 신설	

개선효과



- 대마산업단지 건물 58만㎡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연간 150,800MW 전력 생산 가능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에너지 자립과 공해 없는 친환경 도시 실현

10 골재채취업자와 광업권자 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골재채취법 개선

개선배경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광업권자”에 “탐사권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도 증가 추세에 있음
- * 「골재채취법」 제22조제2항: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탐사권자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제 발생이 예상됨.

개선내용



- 「광업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채굴권자”와 조광권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광업권은 2010.1.17.자 광업법 개정으로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되어 운영
- 탐사권은 광물을 취득하는 권리가 아닌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의 확인을 위하여 선행·일시적으로 부여한 권리이며, 탐사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광물 취득 권리인 채굴권을 부여함

<법령개선안>

현 행	개 정 안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선효과



- 골재채취업자와 광업권자간 법적 분쟁에 따른 경제적 손실 사전 예방
- 타인의 소유 토지에까지 광범위하게 설정되는 광업권의 남발 차단
- 명확한 법령 정비로 국민의 법적 안전성 도모

신속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민의 인력난을 해소하다!

개선배경



- 지역 내 고령화 현상과 젊은 인구 유출로 어민들의 인력 부족현상 심화
* 지역 내 인구 1/3은 65세이상 노년층 및 젊은 세대의 인구유출 현상 심화
- 어업 종사자는 많으나, 코로나 현상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 급감 및 인력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어민들의 부담감 상승

개선내용



현행	개정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으나 지속적인 코로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 등으로 어민들의 인력난 가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빠른 입국을 위한 신속한 사전적 행정 절차 이행 ·필리핀 딸락주간 MOU계약 체결 및 법무부에 도입의향서 제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185어가 459명) 및 어가배정으로 인력난 해소 -해조류 양식(435명-전국최초), 해조류 가공(12명), 굴가지(14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완도군↔필리핀 딸락주)
- 상반기 도입의향서 제출(군>법무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185어가 459명)
-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및 계절근로자 입국 대비 격리시설 확보
-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가작업 현장 투입 및 인력난 해소

개선효과



- 신속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반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 안정적인 어촌인력 지원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기여



12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자 선임요건 완화

개선배경



-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자가용전기설비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가능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③ 제 1 항 에 도 불 구 하 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의거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1,000kw 미만)와 연료전지 발전설비(용량 300kw 미만)에만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선임이 한정되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소수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경우 사업자들이 전기 안전 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 인건비 부담 가중

개선내용



-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개정요청(산업통상자원부)

개선 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③ 제 1 항 에 도 불 구 하 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 에너지 및 연료 전 지 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개선 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③ 제 1 항 에 도 불 구 하 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 소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개선 요청(완도군)
- 규제 건의 사항 관련 부서 개선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상반기 중앙부처 테마형 건의과제 제출 및 산업통상자원부 수용의견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결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고 있는 소수력 에너지에 대해서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가능 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추진(∼23. 12.)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개정 완료(22. 10. 18.)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시행 예정(23. 10. 19.)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규모) 개정 완료(22. 4. 22.)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규모) 시행 예정(23. 4. 23.)

개선효과



- 소수력 에너지의 경우 태양광에너지에 비하여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지만 점차 발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인 상황에서 당초 태양광에너지 및 연료전지에만 전기안전관리대행자도 선임이 가능한 규정을 소수력에너지 발전시설에도 허용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 완화
- 소수력 발전 사업의 규제사항 해소로 소수력 발전 사업 관련 소득 창출 기여

13

LPG배관망·전선지중화·가로등 지하 매설사업 동시 추진으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 최소화

개선배경



- '19 ~ '21년 군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 전선지중화사업, 밝은거리 조성사업 확정으로 진도읍 시가지 굴착공사(46km)가 예정됨에 따라 도로 이중굴착 등으로 주민·교통 불편 가중이 예상되어 타 기관 공사 연계추진 방안 모색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사업별, 기관별 이중 굴착으로 공사기간 연장 및 주민불편 가중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지중화사업, 밝은거리 조성사업 복구포장 공사를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도로 포장예산 절감(2억원) 및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공사기간을 최대 2개월 단축하여 민원 피해 최소화
• 기관별 개별 공사일정 및 굴착구간을 통합 관리하고 실무자 협의를 거쳐 공사순서 및 공사일정 조율 •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도로포장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주민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3개 공사 통합 추진 - 군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진도읍 14개 마을 3,000세대 공급) -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 2개소 연계(참여기관-한전, kt, 민간통신사) - 진도읍 시가지 주요도로 밝은거리 조성 연계 (LED가로등 50개 지하 매설)	

개선효과



- 거미줄 같은 구도심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기설 전신주에 설치된 가로등을 정비하는 등 복합적 정비 시행으로 주민·교통 불편 최소화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망 등 지하매설물 관망도를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지하매설물 사고예방에 기여
 -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및 소방법 적용사항 등 변경된 법 시행으로 인해 각 기관별 추가공사 부분을 상호 협의 진행하여 추가사업비 없이 적법하게 개선



추진부서(☎) | 진도군 그린에너지사업과 (061-540-1171)

아이스팩 재사용 추진을 통한 환경보호(탄소중립)와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비용 절감

개선배경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이스팩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어, 수산물의 천국 1004섬 청정 신안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재사용 아이스팩 무상공급을 통해 수산 상가의 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내부 의견 접수
 - 군청 청사 내 4개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면서 본격 시작
-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를 접한 자매도시 노원구청 관계자로부터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한 간담회 제의 후 두 지자체 간의 세부 협의 추진
 - 신안군 ↔ 노원구 아이스팩 재사용 상호업무 협약식 체결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가 크게 증가하면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아이스팩의 내용물인 젤은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버려질 경우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아이스팩은 분리수거 대상이 되지 않아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버려지는 실정으로, 환경파괴는 물론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음.	·매달 자체 수거 및 노원구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2만여개 이상의 재사용 아이스팩을 수산상가 및 유통센터에 전달

- 재사용 아이스팩 수거 및 활용을 위해 지자체 간 MOU 체결을 통한 본격 시행은 전국 최초
- 이어, 신안군 ↔ 마포구 아이스팩 재사용 상호업무 협약식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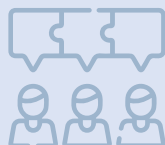
개선효과



- 노원구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재사용 아이스팩과 자체적으로 수거한 아이스팩을 관내 수산상가 및 전갈타운 등 수산양식 어가에 전달하여,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해 환경보호는 물론 수산 상가의 아이스팩 구매 비용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음
- 재사용 아이스팩 수거를 통한 재사용 및 노원구와 협약식을 통한 업무 추진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서,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어 적지 않은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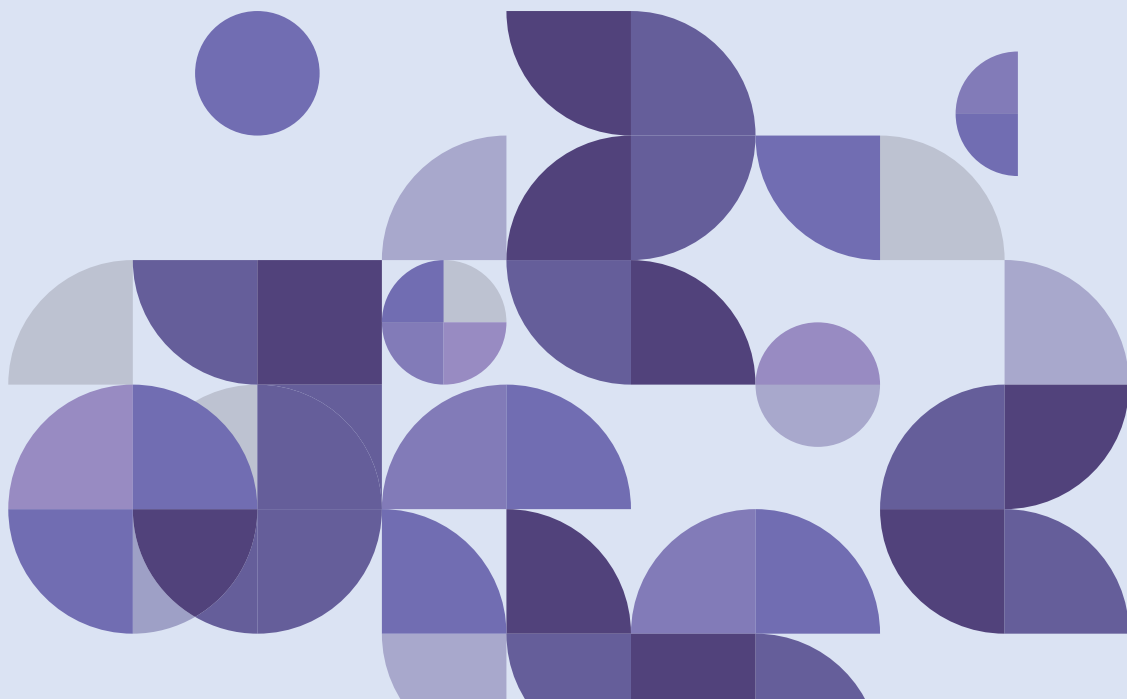
- 신안군 ↔ 노원구 아이스팩 재사용 협약식을 통한 모범사례는 서울시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충남 천안, 경기 안양, 남양주, 전북, 강원 등 전국 지자체에 영향을 미쳐 환경 보호 및 소상공인 비용 절감 등 혁신적인 행정 모델로 꼽히고 있음





Part 3.

보건 · 사회복지



01

감면받고 또 관리받는 전국최초! 산후조리서비스(공공&가정) 중복 제공

개선배경



- 출산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감면료 지원)을 이용하고 난 후에는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 존재
- '16년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관련 안내(복지부 지침)에 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 산후조리 기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14일) 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이용(15일)을 요청하는 산모(민원) 문의 쇄도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비슷한 성격의 급여나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비슷한 성격의 급여나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가능

-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관련 안내 지침 개정 건의 요청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요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우선시행)
- 지원 확대를 위한 전국 최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개선효과



- 공공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전년동기대비 이용률 상승
- 공공산후조리원 전년대비 이용률 32% 상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년대비 8.9% 상승
- 산후조리 시책 추진에 따른 합계 출산율 제고
- 전라남도 합계출산율은 1.02명으로 '15년 연속 도 단위 1위 유지
- 공공산후조리 이용자 경제적 부담 경감
- 일반이용자는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해 30~40만원 절감 효과
- 감면대상자는 130~150만원 절감 효과

02

야간시간대 약국 운영으로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개선배경



- 야간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경증에도 응급실을 방문하는 등의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발생
- 관광지 주변 관광객들의 응급상황시 야간 약국 부재로 불편 가중
* 여수 밤바다 등 주요 관광지 주변 관광객들의 응급상황 다수 발생
-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야간시간대 운영하는 약국이 없음 ·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경증에도 야간 응급실을 찾는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발생	· 야간시간대(22시까지 운영) 5개소, 심야 약국 (24시까지 운영) 1개소 운영

-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정(2020. 7. 6.)
- 2021년 ~ 2022년 여수시 공공야간약국 운영 모집 : 6개소
- 지역별, 운영시간별 등 안배(여서동 2, 학동3, 신기동1)
- 야간 운영 약국 방범용 비상벨 설치비 지원으로 안심 약국 운영

개선효과



- 야간시간 관광지 주변지역 응급상황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 감소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의료비용의 절감



03

의료기관을 통한 긴급의료지원 신청체계 개선

개선배경



- 긴급복지지원사업(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자가 긴급 의료지원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해당 제도를 몰라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긴급의료지원 : 위기상황(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긴급의료지원비 신청 시 퇴원 전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 긴급의료지원비 신청 시 퇴원 전 의료 기관에서 팩스로 신청 또는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 화순 전남대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해당 입원의료기관 사회사업실(원무과)을 통해 직접 안내·접수하는 체계 구축
- 관내 의료기관 분기별 방문하여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홍보 및 협조 요청

개선효과



- 의료기관과 긴밀한 업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체계 강화로 긴급의료 지원 사업 연중 추진, 제도 홍보 활성화
- 원스톱 처리에 따른 복지대상자 편의 증진 기여
-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직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 받아보세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대상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 관직스러운 위기상황으로
·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 소위 소득이 낮은, 가중, 생활형으로
· 가구 소득이 200만원 이하
· 의료,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사유로
· 소위 생활 또는 부양을 위한 경우 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지원(의료비 지원금)
· 주거비 지원(주거비 지원금)
· 교육비 지원(교육비 지원금)
·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지원금)

소위 소득 기준(2021년 기준) 이하인 사람
· 소득 300만원 이하(연간 소득)
· 대도시 18,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5,000만원 이하
· 농·어촌 12,0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가장 가까운 보건복지상담센터(120, 24시간)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0, 24시간)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0, 24시간)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0, 24시간)

규제개선 과정

입원, 치료만 해도
힘드니요?
저희가 대신
처리할게요!

화순군-화순전남대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긴밀한 업무 네트워크를 형성,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해당 입원의료기관 원무과가 직접 안내·
접수하는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당초) 퇴원 전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변경) 퇴원 전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04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

개선배경



- 기존에「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기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운영하였으나, 조례에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있어 방학 기간에 학원 등 자율학습 후 야간에 귀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제한됨
- 일몰 후 귀가하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 보장을 위해 연중 안심귀가택시 이용 요구 증대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①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학기 중(방학 제외) 야간학습 으로 인해 일몰 이후에 귀가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①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야간 학습 으로 인해 일몰 이후에 귀가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학기 중(방학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확대	

개선효과



-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로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 및 귀가 환경 조성



경향신문 지역 해남군의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방학도 이용, 행안부 규제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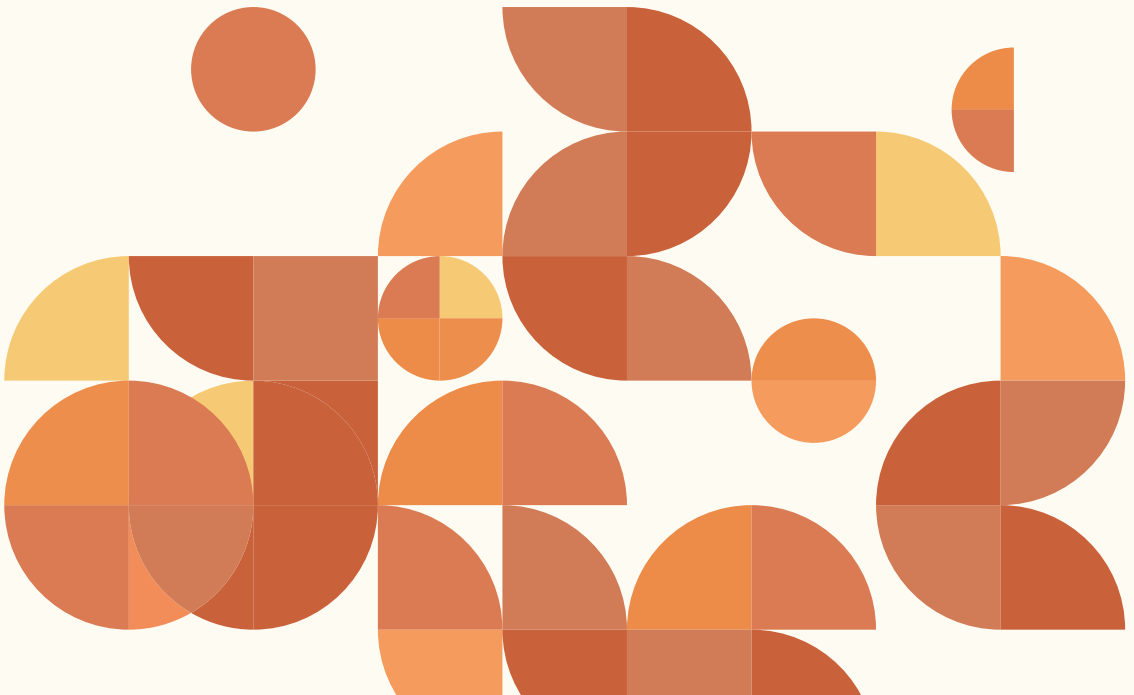
집이 먼 청소년들의 통학을 돕기 위한 '안심귀가택시'를 방학 중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한 전남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의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3분기 지자체들의 적극행정 사례를 심사해 해남군과 경남도·광주광역시 등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들이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한 403건에 대해 내외부 심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다.

행안부 선정 결과를 보면 노인·청소년 복지증진 사례로는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해남군과 인원발급기 개발 및 공무원 화상상담 등을 추진한 장안군이 뽑혔다. 해남군의 경우 대중교통이 부족한 학교와 먼 곳에 사는 청소년들은 기존에는 학기 중에만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원거리에 사는 통학생들은 방학 중에는 학교에 다녀올 때 교통비 부담이 있었고, 학원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해남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해 방학 중에도 통학생들이 안심귀가택시를 이용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Part 4.

국토 · 지역개발



01

4차산업의 혁명,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D2D 규제 개선

개선배경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배달음식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임
*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지난해 9월 외식업주 20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74.9% 외식업계 배달 인력난 호소
-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로봇 수요가 확대되고,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로 배달이 가능한 로봇 D2D(door to door)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으나 규제벽에 난제
 -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로 분류되어 보도 · 횡단보도 통행 제한
 -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의 동력장치로 공원 출입 불가
 -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 촬영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돼 횡단보도 등 통행 제한 ·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의 동력장치는 도시 공원 출입 불가	· 안정성 기준 충족시 인도 주행 가능 법정 추진 · 도시공원 내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안전성 입증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진행 중

개선효과



- 배달로봇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 및 운송비 하향, 자동화를 통한 효율 개선
 - 로봇배달서비스는 초근거리 및 주상복합 등에서 활용 가능
 -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주문 수요 창출 및 인력난 해소
- 라스트마일* 구간의 물류 배송 대체 수단으로 배달 수요가 형성돼 매출 증가
* 물류창고 등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단계



02

신규 도로노선 지정으로 보통교부세 및 국비예산 증액

개선배경



- 지리산케이블카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리산 노고단을 횡단하는 지방도 861호선 노선 변경이 절실한 사항임
* 지방도 861호선 노선 조정을 위한 전라북도 협의가 필요함(노선중점 - 남원시 산내면)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섬진강을 횡단하는 군도 9호선에 위치한 교량철거 및 제방승상 사업비 부담
* 하천시설계획에 맞지 않는 노후교량 철거 및 섬진강 제방승상 사업비 - 110억 원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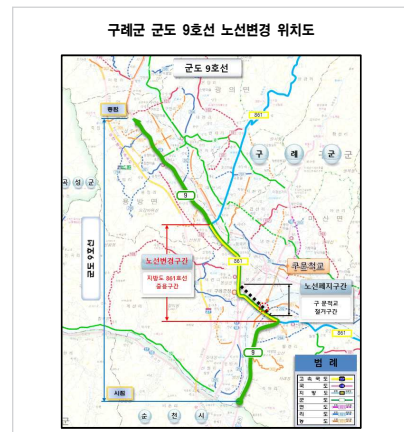
개선 전	개선 후
• 지리산 노고단을 횡단하는 지방도 861호선 도로관리청이 전라남도로 지리산케이블 설치에 위한 당위성 부족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노후교량 철거 및 제방승상 사업비 부담	• 지방도 861호선 일부구간을 노선변경 하고 군도 12호선 신규노선 지정 ※ 보통교부세 16억 원 확보 • 군도 9호선 노선 변경으로 노후교량 철거 사업비 국비 110억 원 확보

- 지방도 도로관리청 전라남도 도로노선 변경 및 신규지정 협의
- 노후교량 철거 및 제방승상을 위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업무 협의

개선효과



- 신규 도로노선 지정 및 도로구간 조정으로 보통교부세 및 국비 예산 확보



추진부서(과) | 구례군 건설과(061-780-2488)

개선배경



- e-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모든 이동수단으로서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있음. 환경오염과 대도시 교통 정체, 이동거리
* 목적에 따른 효율적인 이동수단의 필요성과 맞물려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e-모빌리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지지 않음. '20년 2월 정부에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고, '20년 12월부터는 이들의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이용 문턱도 만 13세 이상으로 낮췄음.
-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안전모 착용, 2인 탑승금지, 음주 운행금지, 인도 보행로 운행금지, 무면허 운행금지) →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개인형 이동수단 전용공간 확충 필요성 대두)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e-모빌리티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통이용권 보장을 위한 안전 기반시설 부재	전국 최초 e-모빌리티 전용도로 조성으로 신산업 인프라 구축

- 전국 최초, e-모빌리티 전용도로 조성
 - 국도22호선을 연결하는 군도24호선 확 · 포장사업 구간에 e-모빌리티 주행로설치 · 개통
 - e-모빌리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설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3가지 유형으로 추진

개선효과



- 급증하는 PM이용자의 안전 도모 및 e-모빌리티 선도도시로서 운행 인프라 구축
-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PM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배려 기반시설로서 노약자 ·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이용권 보장

04

지역특산물 지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개선배경



-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은 감, 포도, 복숭아 주산지이지만 상당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산물 가공 및 체험교육 시설 설치 불가*
* 근거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청년농업인의 규제완화 건의(21.8.)를 계기로 장성군 TF팀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6차산업을 진흥하는 방안 적극 모색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그린벨트 내 가공 및 체험시설 설치 불가로 1차 산업 외 2차, 3차 산업 진입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 좌절	· 시행령 세부적인 규정을 적용해 복숭아, 감, 포도, 민물장어 4개 품목을 '지역특산물' 지정 · 고시 ⇒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체험, 실습 시설 설치 가능해짐

-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 인허가 관련 부서로 TF팀 구성(21. 11. 9.)
- 지역특산물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방안, 규제완화 시 예상되는 쟁점사항 논의
- 지역특산물 품목 신청 · 접수(21. 12. 20. ~ 22. 1. 28.)
- 선정조건 및 관련규정 검토(22. 2. 3. ~ 22. 2. 11.)
- 농정심의회 개최(22. 2. 14.) 및 지역특산물 선정 · 공고(22. 2. 17.)

개선효과



-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농업 부가가치 향상
-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의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증대



추진부서(☎) | 장성군 농업유통과 (061-390-8449)

05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위한 대체편입 부지 마련으로 주민들의 규제 개선

개선배경



- 지역 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립공원지역에 묶임에 따라 엄격한 개발행위 규제 발생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 2,266,221km² 중 완도군은 581,966km²가 국립공원지역에 편입
 - 육지: 농경지, 주택, 양식장 부지 등 3,908,130m²(사유재산 편입 해제 요구)
 -해상: 10,727,590m² 편입(주민 해제 요구)
-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인 토지 다수가 사유지 편입으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개발 및 건축행위 등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다도해해상국립 공원 내 농경지, 주택, 양식장 부지 등 육지 3,908,103m², 해상 10,727,590m² 면적 편입으로 사유재산의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제한 규제사항 발생	· 바닷가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해역은 육상 교환 면적에 포함 가능하여 사유재산권 이해관계 없고,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군 소유 섬 2개소 대체부지 3,614,026m² 마련 · 기존 사유재산 국립공원구역 일부해지 및 주민들의 각종 규제 개선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 해제 건의 요청(노화읍, 신지면, 보길면)
- 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6회)
-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지역협의체 개최(5회)
- 국립공원관리공단 타당성조사 TF팀 안건 협의 및 대체 편입부지 마련 환경부 총괄협의체 안건 제출

개선효과



- 국립공원 구역 변경 관련 대체편입 부지 마련으로 사유재산 개발행위 규제 완화
 - 당초 국립공원 구역에 해당되는 사유지는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대체 편입부지 마련으로 일부 사유재산의 국립공원지역 해제로 규제 해소



추진부서(☎) | 완도군 환경수질관리과 (061-550-5502)

06 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개선배경



- 지원 사업의 대상의 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단체·개인으로만 제한되어 있고 사업의 범위 또한 분명하지 않아, 지원 대상과 사업을 지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선내용



개선 전

제9조(보급지원)

- ① 군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신안군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신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 후

제9조(재정지원)

- ①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법인·단체·개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관련교육·홍보·포상·행사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업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개선지원 사업
 3. 에너지빈곤층 및 군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4.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5. 저소득층 및 고령가구 안전장치 보급지원 사업
 6.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전기·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7. 도시가스소외지역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단체·개인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신안군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신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효과



- 사업의 지원범위 다양화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가 더욱 활성화됨
-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지원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가 확대되어 보다 넓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증가시킴

추진부서(☎)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 (061-240-5456)

개선배경



개선내용



- 산업트랜드 변화에 따른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지원근거 부재

- 「신안군 국내의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표 1의 항목에 '에너지신산업'을 추가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지원 확대하고자 함

현행

[별표 1] 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

① 바이오산업 · 신소재산업 · 항공우주산업

산업명	적용산업(예)
바이오 산업 Bioindustry	•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① 생물체에서 특정한 유전 정보만을 꺼내어 생육이 빠른 미생물의 유전자에 집어넣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②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bioreactor)기술 ③ 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④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신소재 (新素材) 산업 advanced materials	• 금속, 무기(無機), 유기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 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를 이용한 모든 산업 (1) 신금속 재료 ① 형상기억합금(sharp memory alloy) ② 비정질 금속재료(amorphous metal) ③ 초전도재료(superconducting material) (2) 비금속 무기재료 ① 파인세라믹스(fine ceramics) ② 광섬유(optical fiber) ③ 결정화유리(crystallized glass) (3) 신고분자재료 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② 고효율성 분자막(high efficiency separator) ③ 태양광발전 플라스틱 전지 (4) 복합재료 ① 바이오센서(biosensor) ② 복합재료 ③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④ 섬유강화금속(FRM: fiber reinforced metal)
항공우주 산업 航空宇宙産業 aerospace industry	•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류 또는 관련 소재를 제작, 가공, 생산, 개조 및 수리하는 모든 생산활동 - 항공우주산업기술 : 설계, 제작, 시험, 평가 / 기체, 엔진, 소재, 보기, 장비 등 관련 산업

개정안

[별표 1] 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
(제12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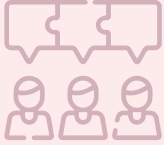
① 바이오산업 · 신소재산업 · 항공우주산업
에너지신산업

산업명	적용산업(예)
바이오 산업 Bioindustry	•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① 생물체에서 특정한 유전 정보만을 꺼내어 생육이 빠른 미생물의 유전자에 집어넣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②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bioreactor)기술 ③ 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④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신소재 (新素材) 산업 advanced materials	• 금속, 무기(無機), 유기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 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를 이용한 모든 산업 (1) 신금속 재료 ① 형상기억합금(sharp memory alloy) ② 비정질 금속재료(amorphous metal) ③ 초전도재료(superconducting material) (2) 비금속 무기재료 ① 파인세라믹스(fine ceramics) ② 광섬유(optical fiber) ③ 결정화유리(crystallized glass) (3) 신고분자재료 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② 고효율성 분자막(high efficiency separator) ③ 태양광발전 플라스틱 전지 (4) 복합재료 ① 바이오센서(biosensor) ② 복합재료 ③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④ 섬유강화금속(FRM: fiber reinforced metal)
항공우주 산업 航空宇宙産業 aerospace industry	•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류 또는 관련 소재를 제작, 가공, 생산, 개조 및 수리하는 모든 생산활동 - 항공우주산업기술 : 설계, 제작, 시험, 평가 / 기체, 엔진, 소재, 보기, 장비 등 관련 산업
에너지 신산업	• 기후변화 대응, 미래 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모든 산업 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관련 ② 에너지신산업 연구 관련 ③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감침인프라(AMI) 등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④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산업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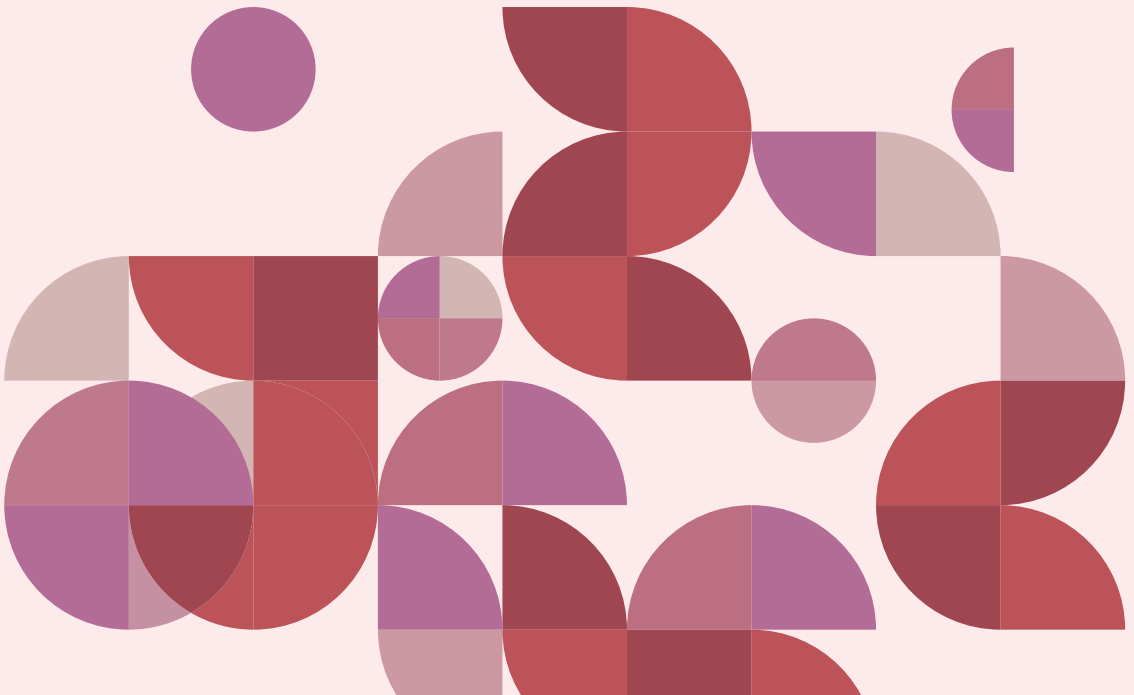


- 신안지역 해상풍력(8.2GW) 발전단지 조성 시 관련 기업 투자지원을 통해 신안군에 이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Part 5.

관광 · 문화



01

노래연습장, 게임산업 폐업 신고 절차 개선

개선배경



- 노래연습장업, 게임산업 업주들의 재정상 문제로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 먼저 폐업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할 지자체에는 당연 통보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
- 지자체에서는 폐업 신고 시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고 있으나 세무서 측으로 먼저 폐업 신고 시에는 개인정보 상의 이유 등으로 폐업 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 관련 법에서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각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 및 폐업사항에 대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임
* 이를 해결코자 직권말소 조치가 있지만 소요 시간 및 인력이 다소 투입되는 실정

개선내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
 - (현행) 현행 규정 없음
 - (변경) 관할 세무서에서 인허가 관청으로 폐업 사실 통보 규정 신설
- ※ 부가가치세법 준용규정과 별도로 명문화된 조항 추가

개선 전	개선 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③ 제1항 외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폐업일은 관할세무서 폐업처리 완료일로 한다.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③ 제1항 외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폐업일은 관할세무서 폐업처리 완료일로 한다.

개선효과



- 중복민원 신청 제거로 국민(사업주)에게 민원 편의성 증진
- 직권말소 등의 횡수 감소로 행정인력 및 경비 낭비 감소
- 관할 세무서와 협업을 통한 행정 네트워크망 구축 강화

02

ICT 기반으로 농어촌 지역간 격차 해소와 새로운 관광지 스마트 치유마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개선배경



- 지역 내 저출산·이주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율 상승으로 노인인구 수 증가 추세
- 지역 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 부재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에 어려움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문화적 체험공간 부재 및 세대 간 정보격차 발생	• 전남 최초 행정안전부 지능형 ICT타운 조성 공모 선정 • 완도군 스마트치유마을 조성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주민들의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 요구 충족 • 지역 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시설 확보로 정보격차와 관광객 유입 활성화에 기여

- 전남 최초 행안부 지능형 ICT타운 조성 공모 선정
- 국내 주요통신사 지역사회 공헌사업 업무 협약
-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 22년도 스마트 치유마을 운영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 65세이상 노인 대상 디지털 이해도 향상 교육 실시(정보격차 해소)

개선효과



- 다양한 체류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여 지역 내 노년층뿐만 아니라 방문객 증대 및 인구유입 효과 제고 기여
- 정보격차 해소와 연계한 지역 내 체험관광시설로 자리매김



추진부서(☎) | 완도군 행정지원과 (061-550-5201)

03 맛집 지정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배경



-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2조에는 맛집의 기준을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완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 맛집을 지정하고 있음.

•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완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 현행 조례에 의거 맛집 기준을 일반음식점업에만 허용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의한 휴게음식점업이나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는 완도군 맛집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규제사항 발생

* 휴게음식점업 : 완도 전복빵(장보고 빵) 등 맛집 지정 불가

개선내용



-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2조 개정

개선 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완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 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완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 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완 도 맛 집" 이란 완 도 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선 후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휴게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에 따른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제 과 점" 이란 「식 품 위 생 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바목에 따른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즉 석 판 매 제 조 가 공 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 공 업 소 에서 직 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요청(완도군 관광과)
- 규제 개선 가능 여부 사전 검토 및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
- 중앙부처 검토 및 네거티브 전환과제 선정 및 조례 일부 개정 추진 및 완료 예정 ('22. 12월)

개선효과



- 맛집 지정 대상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확대하여 맛집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새로운 음식 개발 유도
-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를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새로운 상권 활성화에 기여

2022년 전라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인 | 전라남도지사

발행처 |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
(우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061-286-2651~2652

